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73
----------	-------

발의연월일 : 2026. 8. 20.

발 의 자 : 조승환 · 이종욱 · 이성권
서지영 · 김은혜 · 곽규택
안철수 · 배준영 · 김태호
김승수 · 유영하 의원
(11인)

제안이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은 일반 가정의 청년과 달리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 주거·취업·결혼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어 자립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자립을 도울 필요가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보호조치 종료 전의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그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과 사회 진입을 도우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립준비청년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립준비청년이 매월 적립하는 일정 금액과 같은 지원금액을 자산형성 전용계좌에 적립하여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함(안 제4조).

다.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가 되려는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 지원을 신청한 자립준비청년의 가구 소득인정액의 기준 초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및 금융정보 등을 조사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로 결정받은 경우 및 전용계좌를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관리 등 운영업무와 금융상품 개발·관리 등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은행 등에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의 보조금 및 기관·단체·개인·법인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함(안 제11조).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환경에서 성장하여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 및 사회 진입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 제16조의3제2항 본문 또는 제16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자산형성”이란 취업·창업 등 자립에 필요한 초기 자금이나 학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하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자립준비청년은 우선적으로 본인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자립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전제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한다.

②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본인 명의의 자산형성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 금액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월 자립준비청년이 적립하는 금액과 같은 지원금액을 전용계좌에 적립하여 만기일에 적립된 지원금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③ 자립준비청년은 7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전용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자산형성 지원의 신청 및 대상자 결정) ①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려는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제6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신이 속한 가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자산형성 지원을 신청한 자립준비청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전용계좌 개설에 대한 안내사항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신청인에 대한 제4항의 통지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청, 제3항에 따른 동의서면 제출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의 기준 초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7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신청인(그 가구를 포함한다)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

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로 결정된 자립준비청년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원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로 결정된 자립준비청년이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용계좌를 해지한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원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 회수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 회수 등의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
5.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은

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하 “은행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원)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
2. 기관·단체·개인·법인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벌칙)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및 제7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융자산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은행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4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

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